

# 예 산 총 칙

제1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 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5,951,231,683	178,536,950
	일 반 회 계	4,805,959,416	144,178,782
	특 별 회 계	1,145,272,267	34,358,168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08,824,137	9,264,724
①	상 수 도 사 업	146,999,880	4,409,996
②	하 수 도 사 업	161,824,257	4,854,728
	기 타 특 별 회 계	836,448,130	25,093,444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330,844,098	9,925,323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6,010,634	180,319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6,820,713	204,621
④	하남 3 지구 도시 개발 특별 회 계	52,582,450	1,577,474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1,087,440	32,623
⑥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45,671,893	1,370,157
⑦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7,944,000	238,320
⑧	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	32,025,640	960,769
⑨	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6,311,000	189,330
⑩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63,719,110	1,911,573
⑪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109,648,796	3,289,464
⑫	소 방 사 업 특 별 회 계	173,782,356	5,213,471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876,067천원(내부유보금 3,876,067천원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  
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